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92
----------	-----------

제출연월일	2014. 11.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폐지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이용객의 불만민원 급증,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등으로 '09.01.01부터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폐지 하였으므로 이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4. 10. 30. ~ 11. 20.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